

PQ제도하에서 기술자의 역할 우선 法定비 선행돼야

건설시장개방 대응책도 마련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만 하지 말고, 중재에까지 한단계 높여야 한다. 더욱이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할 여러가지 필수요건이 있는데 중재규정, 중재단체의 구성·중재사의 자격시험·검정·연수 등 특히 기술사의 역할을 선진국의 엔지니어와 같은 수준으로 법제화 하여야 한다.

김 순 근<<合>韓進開發公社顧問, 土木技術士>

지난 93. 7. 3. 중앙대학교에서 대 한토목학회주최로 열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P.Q. 제도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엔지니어의(법적)역할의 초점에서 요약한 것을 기재한다.

기술사의 정의와 역할

선진국의 P.E. 또는 C.E.가 갖는 법적수입권

서구의 기술사제도와 비교할때 비유적으로 적으면 마치 선진국에서 기술

도입으로 국산화된 공산품에는 창조적 가공기술을 가미한 한국형 각종 공산품이 있다시피 우리의 엔지니어도 한국형기술사이고 일본도 소위 P.E. 아닌 ぎじゆつし(Gijutsushi)라고 번역하는 것도 일본형기술사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즉, P.E.나 C.E.(Chartered Engineer)와 같은 법적수입권이 없는 까닭에 우리도 “기술사”(Gisoulsa)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의 실정법을 연구하는 데는 필수과정으로 일본의 실정법규나 그 제

도를 검토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므로 여기서 기술사제도 연구에 관련된 일본의 문헌을 참고로 초역하여 소개한다.

각종 건설공사에서 미·영의 엔지니어(P.E. 혹은 C.E.)의 지위가 계약서류에 의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인근 일본의 도급(청부)제도와 비교해 가면서, 이하에 적은 내용은 한국의 입장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도급계약과 엔지니어(Engineer)

일본에서의 도급계약의 편무성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 四川龍三씨는 토목학회에서의 강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 전술한 건설업에서의 각종 규정에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결된 도급(청부)계약에는 소위 말하는 편무성이 엿보인다. 이것은 원래 쌍무계약으로 되어야하는 도급계약이 당사자간의 사회경제적 역학 관계와 봉건적 사상등에 유래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편무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건

설업심의회에서 작성된 건설공사표준도급(청부)약관계약이 있다.

발주자(갑)은 금전을 도급(청부)자(을)에게 지불하면서도 갑을 관계는 주종관계와 비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바탕을 둔 봉건사상인 것이다. 갑을 관계는 갑(owner 혹은 client)-독립(independent)-을(contractor or constructor)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문제는 발주자와 도급자가 어느 정도 이 관계(정립)를 자각해서 실행에 옮기는가 하는데 있는 것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법적인 계약서류가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영·미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일반조건서(약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규제사항은 아니고 1984년에 用協이 주동자로서 번역되어 참고자료로 그치는데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도 도급계약의 근대화를 위해 작성된 것이 있고, 이것이 전술한 중앙건설심의회(중건심)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약관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보급(일본서)

되면 한국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이고, 도급계약관행에 접근한다고 생각 될 것이다. 엔지니어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한 서구화 관행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표준도급(청부)계약약관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엔지니어의 지위(법적신분)가 여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표준계약에서 발주자, 엔지니어, 도급자라고하는 삼자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발주자(갑)와 도급자(을)라고 하는 관계가 주이고 엔지니어는 감독자라는 호칭으로 약간 명분상 등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전쟁전인 1938년 일본토목학회가 제정한 「도급(청부)공사표준계약서」에 있어서 지적되는 기사의 지위와 동일한 것이다. 동 조사위원회의 近藤鐵太郎 위원이 당시 한탄한 것처럼 역시 「기사의 위치」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中建審 작성 건설공사표준도급(청부)계약약관의 제9조와 제15조는 四川龍三씨의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주문자」(발주자)측 감독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제9조

는 「갑(발주자)는 을(도급자)의 공사시공에 관해서 자기에 대신하여 감독 혹은 지시하는 감독자를 선정할 수가 있고, 감독자는 이 계약서, 도면 혹은 사양서(시방서)에 정해진 대로 사항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각 호라 함은 a) 공사시공시의 입회, 감독, 지시. b) 세부설계도, 원촌(척)도 등 검사, 승낙. c) 공사용 자재등의 검사, 시험 등의 3항목이다.

제15조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을 감독자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감독자는 즉시 조사를 하고 을에 지시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낱말이 걸리는 것이다. 엔지니어(기술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영미식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감독자」는 공사시공시의 입회등 인스펙터(검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며, 또 설계변경시 등 엔지니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고 전술한 문맥에서 쉽게 추리할 수 있는 까닭이다.

쉽게 말해서 인스펙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scarecrow)」같은 것이고 엔

지니어라 함은 「칩 엔지니어(Chief Engineer)」 격이므로 한국이나 일본의 표준계약에서 호칭하는 「감독자」가 양측의 직능을 수행하는 의무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영미방식의 인스펙터의 의무는 지적하건데 「여하튼 현장의 인스펙터는 Spec.에 쓰여있는 것을 얼마든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도 시행에 옮기도록 강박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검사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검사자 : 당해공사에 관한 검사자는 엔지니어 대리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업무는 각종 분야담당의 엔지니어에 대하여 시방서상에서의 일탈하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도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분야) 엔지니어가 문제의 공사에 관해서 그 견해를 구술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공사를 중지시켜두는 명령을 내리는데 있는 것이다.」

한편 영미류(방식)의 계약약관상의 엔지니어는 직명상 일본 국내의 컨설턴트의 칩엔지니어나 공사공단의 기사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장에는 주재엔지니어(Resident Engineer)를 배치해서 엔지니어를 대표

케 하고 있다. 영미에서는 건설공사상의 엔지니어와 건축사(Architect)의 법적신분은 다음과 같이 일반조건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엔지니어의 신분 : 엔지니어는 당해공사의 전반적인 감독권과 지시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그는 당해계약의 적절함을 이행할 때 언제든지 당해공사를 중지시키는 권한을 갖는다. 그는 또 당해계약에 합치되어 있지 않는 공사와 자재를 모두 거부할 권한,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해공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엔지니어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종류의 공사 혹은 자재의 금액, 수량사상과 동일한 것이다. 단지 고용주와 사용인의 선택상 권리가 있을 뿐이다. (고용주와 사용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고용자와 혹은 급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사의 신분 : 건축사는 당해공사의 전반적인 감독권과 지시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그는 계약서류상에 있어서 결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만 발주자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특별한 과정에는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발주자에 의해 인가되어 지거나 여차한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서 도급업자에게 대리권위임장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당해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당해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건축사는 제1의무적 사항으로는 계약상 조건의 해석자일 것이고 또 이행상 결정자이므로 그는 발주자에게나 도급업자에게나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나, 양자에 의한 그 충실한 이행을 강제케하기 위하여 당해계약하에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당해건축사의 고용종결시에 발주자는 별도의 유능한 실적있는 건축사를 임명하는 것이지만 그 건축사에 대하여 도급업자도 별단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건축사에 대하여 당해계약하에서의 지위는 전임자인 건축사의 그것과 같이 한다. 그러한 임명에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중재에 따르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 혹은 건축사의 역할과 신분은 인스펙터(Inspector) 그 자체와 비교해서 격조 높은 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

축사의 신분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직 엔지니어의 지위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관련하여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의 건설공사표준계약약관에도 이와같은 「기사」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발주자(갑)와 도급자(을)가 공정하게 공평한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해 희망적 사항으로서 일본 패전 7년전인 1938년에 토목학회계약서조사위원회 近藤鐵太郎씨의 경과설명에 있었던 것으로서 「...기사의 지위를 확보해야 할 이상안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으나...」, 지금도 종래의 관례가 50여년간 소처럼 끌려다니는 것과 같은 기술자의 신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거의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영·미국에서는 엔지니어와 발주자가 신탁관계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수신관계(fiduciary reation)라고 한다.

이것은 본인과 대리인, 변호사와 의뢰인, 수탁자와 수익자 등 신임을 수수하는 관계에 있어서 수신자가 이것을 남용해서 스스로 수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최고의 선의의무를 부과하는 특수

한 신임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가 윤리에 엄정해야 하는 것은(업무상) 당연한 것이다.

수신관계는 보통의 신임관계(confidential relation)-에컨대 의사와 환자, 승려와 신자와 같은 관계-보다도 일단 격상된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미에서는 발주자와 엔지니어의 관계는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이고 그러므로 발주자는 의뢰인(client)이라고 호칭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엔지니어는 의뢰인 본인의 대리인(agent)이나 미국에서는 대리인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엔지니어는 그 전문직지위에 있는 자가 보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량, 학식, 그리고 경험을 적절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2) 엔지니어는 의뢰인 본인의 합법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3) 엔지니어는 당연히 통상적인 주의력, 근면성, 기량(능력)과 지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엔지니어는 자기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

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엔지니어는 정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의 책임 몇개소는 일반적으로 협회나 엔지니어단체 및 협회, 건설업자협회의 윤리 규정이나 행동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리인의 행동과 중재인의 역할」도 간단히 표현 할 수 있다. 참고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은 반재판관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에서 역할하게 된다.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 외에 발주자와 도급자간에서 중재인(arbiter)의 역할도 수행한다.

당해건설공사에 있어서 엔지니어가 자기의 판단으로 공사나 자재에 결함을 발굴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이외에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발주자 혹은 도급자가 엔지니어의 중재판단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정(사법3심제의)에 끌고 들어갈 수가 있으나 엔

지니어의 중재판단은 당해소송의 정지조건이 되므로 소송에 앞서서 엔지니어의 중재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중재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는 발주자쪽이나 도급자쪽에도 짝을 지어서는 안된다. 이 엔지니어의 역할은 사법적 역할 혹은 재판관적 역할이라 하고 있고, 엔지니어는 재판관과 같은 공정과 공평을 취지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구 기술사의 역할

① 미·영국에서는 엔지니어와 발주자간의 신탁관계의 일을 법적으로 수신(수입)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②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대리인 행동을 하는 외에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중재인 역할도 수행한다.

③ 엔지니어의 중재판단의 역할은 사법적 역할 혹은 재판관적 역할이라 하고 엔지니어는 재판관처럼 공정과 공평을 모토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P. Q. 제도실시와 기술사 역할을 위한 전제조건

실정관련법규의 정비

(1) 예산회계법(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시행령특별규정(1975. 4. 17. 대통령령 7603호)

· 입찰 자격사전심사와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일부 법조항개정이 불가피하다.

(2) 건설업법(1984. 12. 31. 법 제3765호 전면개정)

· 제17조(도급공사의 제한)
·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 조항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 보완할 사항은 P. Q. 심사로 도급자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32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3장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1~10항까지

·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만 하지 말고, 중재에까지 한단계 높여야 한다.

· 더욱이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할 여러가지 필수요건이 있는데 중재규정, 중재단체의 구성·중재사의 자격시험·검정·연수 등 특히 기술사의 역할을 선진국의 엔지니어와 같은 수준으로 법제화 하여야 한다.

·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직 무중 기술중재 조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 일본건설업법 제25조1~

24항까지 중재조항이 있다.

· 일본건설업법 제4장 「건설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하는 조항이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1987. 10. 24. 법 제3934호)

제27조(건설공사의 시공감리등)

제28조(감리전문회사)

· 위 두 조는 건설공사의 정보화시공개념에서 기술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조항의 명시가 필요하다.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현 조항의 3개항 외에 새로이 표준약관조항이 조문화되어야 한다.

(4) 기술사법(1992. 11. 25. 법제4500호)

제3조(기술사직무)

제5조(기술사활용시책)

· 입법당시 각부처간 기존정책의 고수입장사정으로 인해 부득 기술사회 요구대로 입법은 되지 않았다.

· 기술사 직무의 각종관련법규에 활용시책을 법조문화하는 일이 잔존해 있고 이것은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2항의 시책은 과기처산하 기술사관리 위원회가 심의(동시행령제11조)하게되어 있다는 것이다.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1992. 11. 25. 법제4501호)

· 제4조(엔지니어링활동규제의 신고) 1항에는 기준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위법이다. 신고제에는 기준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 부칙제2조(기술용역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의 조문화는 법명칭을 지칭하는 명확한 표현으로 “...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야 한다. (위법조항)

(6) 지방자치법(1988. 4. 6. 법제4004호)

관심대상이 되어야 한다.

(7)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1984. 12. 31. 법제3779호)

· 하도급의 정의(건설업법 제2조)

⑤이 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와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라 함은 하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1975. 12. 31 본항 신설)

제2조(정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로서 중소건설업자(건설업

자중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

가. 건설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라.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1991. 12. 14 본목개정)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로서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받은 자

2. 상시종업원이 100인이하인 사업자로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받은 자

3. 중소건설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서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

註記 : P.Q. 심판에 하도급업자의 명시 조문화 요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를(1986. 12. 31. 법제3922호)

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규제법률이다. 그러나, 기술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표준약관제정에 부하여야 한다.

· 선진국에서는 P.Q.제도와 함께 표준약관이 제정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술사 역할 상의 기준이 있다.

선진국의 표준약관

서구제국에서는 기술사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각종 표준약관이 해당 학회나 기술사 단체별로 제정 적용되어 왔다.

표1은 FIDIC(국제건설링엔지니어 연합회)가 제정한 기

술사 직무(용역), 토목·건축·기계(플랜트 포함)등에 관한 표준약관의 명칭 개요를 적은 것이다.

표 2는 일본정부, 각종유관단체가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약관명칭 직별표이다.

특이한 것은 건설공사의 분쟁해결에는 중재절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 자체보다도 관련단체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정부인정 혹은 승인제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사에 관한 표준약관뿐이고 기술사직무에 관한 계약은 아직 제정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기본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영국토목학회(ICE)가 제정 적용하고 있는 ICE의 표준약관으로서 일본에서 번역된 것만 예시할 것같으면 「Engineering Law and ICE Contracts」, 「Civil Engineering Procedure by ICE」등이 있고, 중재에 관해서는 「Russell on Arbitration Eighteenth Edition by Anthony Walton Q. C., London Stevens & Sons Ltd., 1970.」과 「Handbook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7.」 발간물등

표 1 기술용역용, FIDIC(국제건설링엔지니어연합회) 제정 최신(1979 및 1980) 표준약관(명칭) 일람표(SGK)

No.	유형 및 명칭	전 문 내 용	비 고
1)	FIDIC IGRA 1979 P.I(Preinvestment Study) (기본 및 타당성조사설계용역)	본문 9장 58절 및 부속서 및 서식(A~D)	§ 2.6.1. 중재조항이 있다.
2)	FIDIC IGRA 1979 D&S(Design and Supervision of construction of works)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본문 9장 64절 특별장 9절 부속서식(A~C)	§ 2.6.1. 중재조항이 있다.
3)	FIDIC IGRA 1980 PM(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약관)	본문 9장 64절 특별장 9절 부속서 A~C서식	§ 2.6.1. 중재조항이 있다.

註記 : 1) Vol. 17 No.2 June 1984 기술사회지 pp.46~67 「FIDIC제정기술용역에 관한 최신표준약관 IGRA」등이 게재되어 있다.

2) (사)한국기술용역협회가 1984년 3월에 제정한 「건설공사감리를 위한 감리계약서」는 FIDIC의 IGRA 1979 D&C를 표본으로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있다. 또, 계약약관으로는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Standard Forms, I.N. Duncan Wallace, London Sweet & Maxwell」과 「Law and Practice of Building Contracts, D. Keating (Third Edition) London Sweet & Maxwell」 등 기타 10여권의 계약약관해설의 전문서적이 영국에서 발간되어 있다.

중재와 관련된 국내실정법규 현황
중재·조정·특별심판등 세가

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중재에 관한 국내입법사례
(1) 중재법(1966. 3. 16. 법제1767호)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됨.
「이법 제18조(중재규칙의 승인)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은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 2. 17)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위원회가 작성한 상사

중재규칙은 1960년 10월 13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은바 있다.
(2)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 법제1327호)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쟁의를 알선·조정·중재의 3단계를 다 구비한 법률중의 첫번째 국내실정법이다.
(3)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 11. 28. 법제3979호)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제18조(중재절차등)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표 2 : 일본 건설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명칭표(SGK)

계 약 명 칭	제정월일	제 정 기 관 명	비 고
1)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1950. 2.	중앙건설심의회	현재까지 6차개정한바 있음
2) 민간건설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1951. 2.	"	(갑)대형공사, (을)소형공사
3) 건설공사표준하청계약약관	1950. 9.	"	2차개정함
4) 4회(會)연합협정·공사청부계약약관	1923. 8.	일본건축학회·일본건축가협회 일본건축협회·전국건설업협회	4차개정함. 민간공사용
5) 공사하청기본계약약관 및 개별 공사하청계약약관	1977. 11.	전국건설업협회·건설공업경 영연구회	건설성계획국건설업과인정
6) 공사청부계약서의 제정에 관하여	1973. 4.	건설성후발제100호	
7) 공사청부계약서 운용기준에 관하여	1973. 4.	건설성후발 제129호	

비고 ① 일본건설업법(1944. 5. 24법제100호 제14차 개정)
제3장의 2 : 건설공사의 청부계약에 관한 분쟁의 처리 : (제25조가 16개항으로 구성됨)
제25조의 15(중재개시)
② 일본민사소송법 제8편 중재수속(절차) (제786조~제805조) 등이 있다.

※ 알선·조정단계없이 곧바로 중재절차를 받게 되어있다.

(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0. 8. 1 법제4258호) 전문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됨

제1조(목적)···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제2조~제14조)

제3장 분쟁조정(Conciliation) 제2절 알선, 제3절 조정(Reconciliation)

제4절 재정(Arbitration)(제28조~제44조)

• 특징

(1)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해 알선(conciliation)조정(Reconciliation), 재정(중재: Arbitration)등 세가지가 있다. (단일법상)

(2) 각종 환경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임명(면)기관으로 산하단체가 된다.

(3) 알선위원·조정위원·재정위원 등, 이 법에 의해 법적지명을 행사한다.

(4) 민간중재기구에서 분쟁 해결하는 서구중재방식과는 판이한 관제행사를 하는 느낌이 든다.

조정에 관한 입법사례

(1) 건설업법(1958년 5월

제정공포 10여차에 걸쳐 개정 삭제하다가 1988. 12. 31. 전면개정됨)

제32조 ①~⑩(제3장의 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2) 전기공사업법(1976. 12. 31. 법제62967호)

제3장(제14조~21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3) 전기통신공사업법(1976. 4. 6. 법제2893호)

제17조의 ②(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등)

제17조의 ③(조정 신청 등)

(4) 저작권법(1986. 12. 31. 법제3916호)

제2조 ⑫ 컴퓨터프로그램

제4조 ①의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7장(제81~90조)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86. 12. 31. 법제3920호)

제27조(손해배상청구)

※ 위 조항의 맹점을 활용하여 불법복제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소건 사례가 허다하다.

주기 : 과기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정시안을 1992.

6. 8. 확정하면서 저작권법과 보완, 동일하게 분쟁조정하게끔 하였다. (표 3 참조)

(6) 의료법(1973. 2. 16.

법제2533호 전면개정)

제5장의 2 분쟁조정(54조의 2~54조의 8)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보사부직속이고, 도지사소속하에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다.

(7) 소비자 보호법(1986. 12. 31. 법제3921호)

제6장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제34조~제38조)

(8) 부동산중개업법(1983. 12. 30. 법제3676호)

제19조(손해배상책임)

제35조의 2 : (공중사업)

제35조의 3 :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설치·운영한다.

(9) 증권거래법(1976. 12. 22. 법제2920호) 제202조(쟁의조정기관의 설치)

(10) 보험업법(1977. 12. 31. 법제3043호)

제197조의 2(보험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심판에 관한 입법사례

(1) 특허법(1990. 1. 13. 법제4207호로 전면개정)

제7장 심판 및 항고심판(제133조~제177조)

(2) 해난심판법(1971. 1. 22. 법제2306호)

제3장 해사보좌인(제27조~

제30조)
제4장~이하(심판의 세부조항)
제3조(심판원의 설치)···해
난심판원···
※ 독립된 해사 기술에 속한다.
(3)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제2679호)
제7장 심사와 심판(제55조~제81조)
제67조(국세심판소) : 국세
심판관에는 법률전문가외에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등

이 자격자가 된다.
(4) 토지수용법(1962. 1. 15. 법제965호)
제25조(협의와 재결의 신청)
제29조(재결사항)
제37조(심의의 개시)
제38조(재결기간)
제40조(화해의 권고)
제43조(재결서)
제73조(이의의 신청)
제7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맺는말

P.Q. 제도를 재무부가 93. 7. 1.부터 실시하는데 앞서서
전재(법적)조건이 정비되어야
하고 또, 건설시장개방대책에
도 손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후일 재론기로 한다. ㉠

표 3 조정·중재위원회 운영실태(중앙일보 92. 5. 28)

위 원 회	신 청 건 수	기 간	결 과 (건)						계 류 중	* 관련법규 (SGK)		
			조정	중재	알선	행정지 도·자 체처리	불 성립	기각 · 각하			합의 취소	
증 권 쟁 의 조 정	0	77~91	0							증권거래법제202조(쟁의 조정기관의 설치)		
금 융 분 쟁 조 정	241	87.12~91	89					44	57	51	보험업법제197조의2(보 험분쟁조정위원회)	
건 설 업 분 쟁 조 정	35	89.12~91	3					18		14	건설업법제32조	
소 비 자 분 쟁 조 정	616	87~91	414					140	37	23	2	소비자보호법제34조
중 앙 의 료 분 쟁 조 정	8,959	89~91	144				8,653	28		134		보험업법제197조의 2~8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1,140	91.7~92.4	70							935	135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18~44조
저 작 권 심 의 조 정	58	88~91	29					22		7		저작권법제81~90조
노 동 조 정	6,701	89~91		295	732	272	590				4,812	노동쟁의조정법제18~44조
언 론 중 재	929	81~91		236				267	30	396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대 한 상 사 중 재 원	3,452	86~91		329	3,123							상사중재규칙(대법원승기)

* 필자가 보필한 것임. 기간은 설립연도와 무관함.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에 의거함.

註記 : 1992. 6. 8. 과거치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법률안 확정발표에 따르면 이 법제2조 및 제29조등을 저작권
법과 동일하게(이 법)조정 심의하게 되어있다.